

제 1158 호
1985. 8. 1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
편집인 : 공 모 관 이 광 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545 호 : 도시계획용도지구 (아파트지구) 변경결정에 대한지적승인	3
제 546 호 : 주택개발사업시행인가	3
제 547 호 : 주택개발사업시행인가	4
제 54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고시	4
제 549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고시	5
제 550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	5
◎ 구청공고	
강서구공고제 46 호 : 관인개작공고	6
동작구공고제 58 호 : 동사무소위치이전 및 변경 (정정)	8
◎ 사 령	

공											
관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45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아파트지구) 변경 결정에 대한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470 호 (83.9.10) 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용도지구 (아파트지구) 청담지구에 대하여 도시

○ 도시계획 용도지구 (아파트지구) 지적승인조서

계획법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1 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동법제 13 조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마목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장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 14

서울특별시장

지구명	위치	지적승인면적	비고
청담지구	강남구삼성동 10-4 일대	8,496 ㎡	해제지적승인임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: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46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470 호 ('73.12.1) 및 동고시 제 55 호 ('81.2.20) 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762 호 ('84.12.18) 로 사업계획 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상계제 5 구역 제 1 지구중 일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 30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 14

서울특별시장

가. 고시내용

1) 사업의명칭 :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

2) 시행구역 및 면적 : 상계제 5 구역에 1 지구

(도봉구상계동 1112, 1113 일대)

상제제 5 구역(74,836 ㎡)제 1 지구
(12,530 ㎡) 중 일부 (5,631 ㎡)

- 3) 사업시행계획
연립주택 3층 6동 72세대 (13평형)
관리동 1동
- 4) 설계도서 생략
- 5) 시행자: 서울특별시
- 6) 토지소유자: 시유지
- 7) 시행기간: 인가일로부터-85.12.31
- 8) 수용할토지 건물조서: 없음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47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
인 가 고 시

- 1. 건설부고시 제 343 호 ('78.11.11)
로 사업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
시제 483 호 ('84.8.16) 동고시 제 484
호 ('85.7.22)로 사업계획 변경결정
된 북가좌제 1 구역에 대하여
- 2.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, 제 16 조 및
같은법시행령 제 20 조 규정에 의거
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변경 인가
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
주택개량과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와
북가좌 제 1 구역 재개발조합에 비치
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 14.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의명칭: 주택개량 재
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및 면적

- 1) 시행구역: 서대문구북가좌동
145번지 일대
- 2) 면 적: 34,486 ㎡ → 34,425 ㎡
(감 41 ㎡)

다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서울
서대문구 북가좌동 417-10

라. 시행기간: 84.11 ~ 86.12.31

마. 시행인가년월일: 84.11.29

바. 시행자: 주택개량 재개발복가
좌제 1 구역조합장 박홍득

사. 토지건축물등의명세: 별첨(생략)

아. 사업시행 변경 인가사유: 대한
지적공사 지적측량성과도에 의거
구역 및 세부도로 변경이 없는
단순한 면적정정, 건물 1층코아
변경(출입구) 및 기초변경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4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고시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555 호 (84.9.15)
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된
동덕여자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제 24 조제 1 항 및 같은법시행령제
6 조와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고
도시계획법제 24 조제 3 항 규정에 의
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14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하월곡동산2-88
성북구상월곡동산 1-62 일대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명칭 : 동덕여자대학시설확충
다. 사업의착공 및 준공예정일
착 공 : 84. 9.15
준 공 : 당초 : 85.8.31
준공 : 86.4.30
라. 기타사항 : 변경없음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49 호
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을 도시계획법 제12 조제 1 항 및 같은 번시행령 제 6 조와 제 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 12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14.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시설명	위 치	규 모 (㎡)		비 고
		당 초	면 적	
학 교	동대문구면목동49-3 일대	12,699.7	12,558.7	도면정정없이면적정정감 141 ㎡
"	서대문구홍은동 356-9 "	39,220	40,180	증 960 ㎡

○ 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50 호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도시계획법제 12 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 나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





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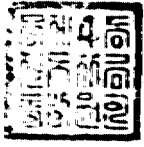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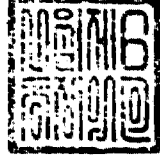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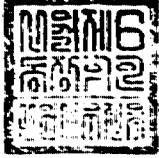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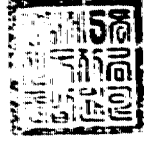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14.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3	24	25	725	신대방동 351-5	신대방동 395-7	천구간 폭원 축소
대로	중로	3	174	12	725	"	"	

<p>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도면 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구 청 공 고</p> </div> <p>◎강서구공고제 46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 인 개 각 공 고</p> <p>1985. 9. 1일자 분동으로 신설되는 강서구 산하 아래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정에</p>	<p>의거, 관인을 신조 하였기 동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 8.13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개시일 : 1985.9.1 2. 관 인 명 : 동장의관인, 민원사무용직인, 체인, 전도자금출납원인 3. 동 명 : 등촌1동장, 등촌2동장, 목4동장, 신월5동장, 신월6동장, 신정5동장 4. 관인개각인명 :
---	---

동 명	일반사무용관인	민원사무용직인	체 인	전도자금출납원인
등 촌 1 동				

동 명	일반사무용관인	민원사무용직인	계 인	전도자금출납인
동촌 2 동				
목 4 동				
신월 5 동				
신월 6 동				
신정 5 동				

◎ 동작구공고제 58 호

동사무소위치이전및변경 (정정)

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사무소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전 및 변경 (정정) 공고한다. 시행일자 1985.9.1.

동 명	현 행 위 치	변 경 후 위 치	비 고
	서울특별시동작구	서울특별시동작구	
노량진 2 동	" 노량진동 302-305	" 노량진동 302-291	
상 도 1 동	" 상도동 749	" 상도동 514	
상 도 3 동	" " 315-7	" " 315-37	
상 도 4 동	" " 198-48	" " 188-81	
본 동	" 본 동 126-13	" 본 동 10-23	
혹 석 2 동	" 혹석동 43-2	" 혹석동 25-13	
사 당 1 동	" 강남구 방배동 369브덕1	" 사당동 1049-11	
사 당 2 동	" 동작구사당동 708-594	" " 708-433	
사 당 3 동	" 사당동 산 24	" " 산 24-1	
사 당 4 동	" " 300-67	" " 300-8	
신대방 2 동	" 신대방동 356-78	" 신대방동 355-9	

1985. 8. 14.

동 작 구 청 장

사 령

◎ 1985 년 8 월 16 일

명 제 296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 재 유	독도수원지사무소	관악구	지방토목기사
구 본 균	비상계획과 파견 (85.8.16-85.12.31)	올림픽건축담당관	지방건축기사
박 현 식	올림픽건축담당관 파견 (85.8.16-85.12.31)	기술심사담당관	지방건축기사

